

수 원 시

수원시 공고 제 2017- 1461호

제 목 :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공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6월 23일

수 원 시



대 상 시 설			지 정 사유	지정 등급	안전점검·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	비 고
시설명	소 재 지	소 유 자 (점유자·관리자)				
삼희교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8-90	수원시장 (공공시설)	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	D등급	-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 - 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행제한 실시	보수·보강